

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

김제가나안요양원

제1조 【 계약목적 】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(장기요양급여수급자)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.

제2조 【 계약절차 】 시설 입소를 희망하는 자는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센터에서 등급 판정을 받은 후 장기요양인정서 등 관련 서류를 시설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3조 【 계약기간 】

- ① 계약기간은 별도의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, 입소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.
-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입소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, 입소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.
- ③ 입소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.
(단, 시설 정원이나 입소자의 장기요양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.)
- ④ 계약내용 변경사항(장기요양 인정등급, 장기요양 급여비용, 비급여비용 등) 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.
- ⑤ 입소자나 보호자는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.

제4조 【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】

- ①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(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)에 따른 장기요양보험수가(노인요양시설) 및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.

- ② 이용료의 본인부담비율은 장기요양수가 급여비용에 한해 공단청구금액의 20%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경감대상자는 공단이 정하는 감액 비율에 따라 감액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무료로 한다.
- ③ 이용료의 비급여 항목은 다음과 같다.
 - 1. 식사재료비 : 1일 3회 제공
 - 2. 간식비 : 1일 2회 제공
- ④ 장기요양서비스 이외에 발생하는 개인 외래진료비(병원비, 약제비 등), 외부 이동 교통비, 개인 기호품 구입비 등 개인지출비용은 입소자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.
- ⑤ 그 밖의 기타 비용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며, 규정에 없는 비용 발생 시 당사자간의 협의 하에 별도로 정한다.
- ⑥ 이용료 납부방법은 다음과 같다.
 - 1. 입소자 또는 보호자는 해당 월의 입소비를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.
 - 2.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대한 별도 서면발급 요청이 없으면 문자, 메세지 등의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.
 - 3. 이용료 납부는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기재 된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되 별도의 요청이 있으면 카드 납부도 가능하다.
 - 4. 장기요양 등급외 이용자는 시설과 계약자 상호 협의에 의하여 이용료를 산정한다
 - 5.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른 입소 비용 및 비급여 비용의 상세 비용은 별도로 정하여 급여제공계약서를 통하여 명기한다.)

제5조 【 계약자 의무 】 서비스 제공자, 입소자 및 보호자는 다음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.

- ① 서비스 제공자(시설)의 의무.
 - 1. 표준 급여서비스의 성실한 제공의무
 - 2. 입소자에게 일어난 신변이상에 대하여 즉시 ‘대리인 또는 보호자’에게 통보
 - 3.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시설급여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성실히 이행의무
 - 4.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입소자의 신상 및 질환증에 관한 비밀유지
(단,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)
 - 5.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

6.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

②. 입소자의 의무

1. 월 이용료 납부 의무
2.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
3.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
4.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시 즉시 통보 의무
5. 기타 시설규칙 이행 의무

제6조 【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】

① 신원인수인(보호자 또는 보증인)의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입소자가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
2.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입소자의 퇴소·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
3. 표준약관에 따른 입소자 면회 및 외박·외출에 관한 권리
4. 입소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
5. 입소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
6. 입소자에 대한 건강, 식사, 생활상담,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
7. 입소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
8.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시설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,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
9. 입소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
10.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, 퇴소(전원)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
11. 시설의 협약·연계 병원 외 특별한 경우 입소자에 대한 지정 병원 이용을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및 입소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

② 신원인수인(보호자 또는 보증인)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
2.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을 부담할 의무
3. 인적 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
4.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

5.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, 간호 및 간병, 입·퇴소 절차,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
6. 입소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·집기 등의 오손, 파손,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
7.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에 협조 할 의무

제7조 【 계약해지 요건 】 계약의 해제 요건 및 비용 반환에 관한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① 계약의 해제 요건

1.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
2.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
3. 타 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
4. 입소자가 입소규칙 및 시설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,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
5.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
6. 입소자의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

②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

입소자가 퇴소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 입금으로 반환한다.

제8조 【 입소물품 】

- ① 입소시 보호자와 협의하여 꼭 필요한 생필품(의복, 신발, 사진, 책, 기타 애장품 등)과 일부물품(남자의 경우 면도기)을 반입 사용한다.
- ② 다른 입소자에게 피해를 주거나, 위험한 물품(애완동물, 라이터, 칼 등)은 반입을 금한다.

제9조 【 면회 및 외출·외박 】

- ① 입소자의 면회시간은 매일 09:00시부터 21:00까지로 한다
(단 입소자와 제공자 및 보호자가 동의할 경우 변경 할 수 있다).
- ② 입소자의 외출·외박시 사전에 제공자(시설)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- ③ 시설이 제공하는 음식물 이외의 음식물을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반입하고자 할 때에는 시설과 협의 후에 반입하여야 한다.

- ④ 외출·외박 중 입소자에게 신체적·정신적 변화 등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시설에 즉시 사실을 알려야 한다.

제10조 【 건강관리 】

- ① 입소자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입소자와 시설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한다.
- ② 입소자가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.
- ③ 의사의 진료결과 입원이 필요한 질병이나 월 1회 이상 장기간 진료가 요구되는 경우 진료비와 부가서비스 경비(교통비, 외부간병인 등)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부담한다.
- ④ 입소시 입소자의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고 기록 및 건강유지, 악화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
- ⑤ 입소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활력증상 확인, 투약관리, 욕창관리, 낙상방지 등 건강관리 활동을 한다.
- ⑥ 입소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물리치료, 재활치료를 제공한다.

제11조 【 시설물 관리 및 배상 】

- ① 시설 내·외부에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, 입소자(이용자) 및 직원의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을 위해 영상정보처리기를 설치·운영하도록 하고 이와 관련 된 사항은 시설의 「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및 관리방침」을 통해 안내한다.
- ② 입소자는 기관의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.
- ③ 입소자에 의해 기관의 시설물이 파손 또는 멸실 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(대리인)가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.
- ④ 입소자 또는 보호자(대리인)가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시설이 시설물의 잔존가치 등을 고려 하여 실비로 산출한 비용을 그 내역과 함께 제시하고 입소자 또는 대리인(보호자)는 이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.

제12조 【 위급시 조치 】

- ① 입소자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협약병원,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.
- ② 보호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

한다.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

- ③ 입소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 시설은 즉시 병원으로 후송하고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. 단 보호자와 사전에 협약이 있을 경우 시설이 장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.
- ④ 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가 불가능할 때 시설은 입소자의 입소월액 또는 시설의 운영비로 화장에 의한 장례를 집행하고 추후에 보호자와 정산할 수 있다.

제13조 【 임종 및 장례 】 입소자의 임종 및 장례절차는 가족이나 연고자가 있을 경우와 무연고자를 구별하여 정한다.

- ① 가족이나 연고자가 있을 경우
 - 1. 임종이 임박하였을 시 치료 및 입원은 보호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.
 - 2. 장례는 보호자 또는 신원인수인의 정함에 따라 가족이 장례절차의 모든 것을 수행하게 한다.
- ② 무연고자
 - 1. 임종이 임박하였을 시 치료 및 입원은 시설의 책임 하에 결정한다.
 - 2. 장례는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행정절차에 의거하여 장례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한다.
 - 3. 1개월 이내 관할 동(읍, 면)사무소에 사망신고를 한다.

제14조 【 식사 및 간식 】

- ① 시설은 1일 3식 및 간식을 입소자에게 제공하며, 입소자의 상태에 따라 특별식을 제공할 수 있다. 특별식(경관급식비 등) 비용이 일반 수급자의 식재료비/간식비를 초과하는 부분은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별도 부담한다.
- ② 시설은 식단표 및 간식제공계획에 대하여 사전에 입소자에게 제공하고 게시하여야 한다.

제15조 【 영양실의 배정 】 입소자의 영양실 배정은 입소순서에 따르며, 입소 후 입소자의 건강상태, 수발조건,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입소자 또는 보호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설이 조정할 수 있다.

제16조 【 개인정보 보호의무 】

- ① 입소자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.
- ②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입소자의 개인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

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.

- ③ 입소자의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에 대한 승낙은 서면(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서) 으로 한다.
- ④ 입소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,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.

제17조 【 기록 및 공개 】 입소자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, 입소자나 가족이 요구할 경우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.

제18조 【 배상책임 】

-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설은 입소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.
 - 1.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입소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
 - 2.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거나 약을 잘못 투약하여 입소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
 - 3.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입소자를 부상케 하거나,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
 - 4. 학대(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)로 인하여 입소자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,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
-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소자는 시설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.
 - 1.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하였을 때
 - 2. 시설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입소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
 - 3. 입소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
 - 4. 입소자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